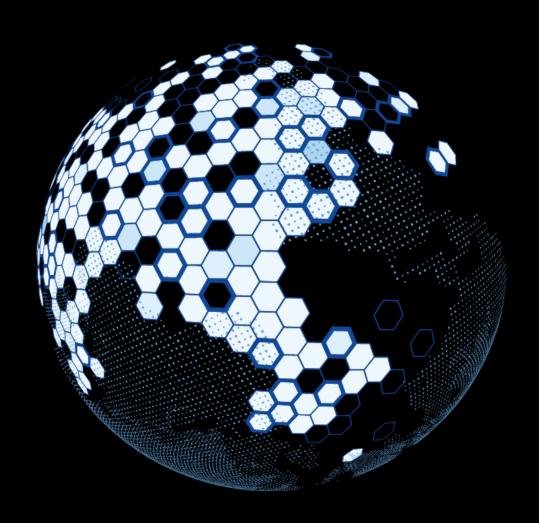
# 세무관세 뉴스

2024년 9월







딜로이트 베트남이 2024년 9월 18일 런던에서 열린 ITR Asia Pacific Tax Awards 2024에서 4년 연속으로 "Vietnam Tax Firm of the Year"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예로운 수상은 저희 팀이 보여준 변함없는 헌신과 세무 서비스에 대한 탁월함의 상징이자, 고객님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저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딜로이트는 항상 고객님께 최고의 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고객님들이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성원 덕분입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파트너로서 고객님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무 분야에서 탁월함의 기준을 높여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무 관련하여 더 필요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목할 만한 사항

#### 세무관리

• 3호 폭풍과 그에 따른 홍수의 영향을 받는 조직, 개인,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연장

#### 법인소득세 (CIT)

- 회수된 토지에 있는 건물의 건설 비용
- 합병 시 자본 이전 가격과 재평가 자산 가치의 차이
- 대금 미지급 조건으로 계열사로부터 기계 장비를 수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 간접세 (VAT)

- 세무조사 종료 후 인정되지 않은 지급 증빙서류
- 종속 회계 지점 및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규정
- 정기 예금 이자에 대한 은행으로의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소득세

- 직원 휴가비에 대한 개인소득세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서, 거주증 및 비자 수수료에 대한 개인소득세
- 의무 보험 대상이 아닌 직원의 보험료에 대한 개인소득세



#### 외국인 계약자세 (FCWT)

 베트남에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계약자의 세금 코드 등록



#### 무역 및 관세

- 국내 기업의 수출 가공업체(EPE) 위탁 가공에 관한 안내
- 사용 목적 자의적으로 변경 시 수입 관세 면제 물품 처리
- 중국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C/O Form E
- 수입자와 공급자 간의 특수 관계 신고 및 관세 평가 결정
- 관세 검사 및 감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카메라 시스템을 갖춘 창고, 시설 및 EPE 시정시정



#### 세무관리 ("Tax administration") 지침문서

#### 3호 폭풍과 그에 따른 홍수의 영향을 받는 조직, 개인,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연장

2024년 9월 13일, 세무총국은 제3호 태풍과 후속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 지방 세무당국에 대한 안내를 위한 제4062/TCT-CS호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세금 납부 연장:**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금 납부 연장 요청을 고려한다.

#### 연장 기간:

- 최대 2년: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산 및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원래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2년 연장 가능한다;
- 최대 1년: 관할 당국의 요구로 인해 생산 및 사업 집하장를 이전해야 하여 운영을 중단한 납세자는 원래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1년 연장 가능한다.
- 연장 기간 동안 세금 부채에 대한 벌금이나 지연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 세무당국의 책임자가 세금 납부 연장 서류를 바탕으로 세금 금액과 연장 기간을 결정한다.

#### 세금 납부 연장 서류:

- 세금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에는 사유, 세금 금액 및 납부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 세금 납부 연장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9월 13일 제 4062/TCT-CS 호 OL)





#### 법인소득세 (CIT)

#### 지침 문서

#### 회수된 토지에 있는 건물의 건설 비용

2024년 7월 8일 하이퐁 세무국이의 제 2636/CTHPH-TTHT호 공문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투자 단계에 있는 회사가 사업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계획 및 투자부서의 결정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지연된 토지로 인해 토지를 반환해야 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할 수 없다. 또한, 건축 비용은 법인세(CIT) 계산 시공제되지 않는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4년 7월 8일 제 2636/ CTHPH-TTHT 호 OL)

#### 합병 시 자본 이전 가격과 재평가 자산 가치의 차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액 인수된 후, 모회사가 그 회사와 합병될 경우, 인수에 대한 이전 가격과 합병 시 인수된 회사의 재평가 자산 가치 간의 차이는 법인세(CIT) 계산 시 기타 수익으로 간주된다.

(세무총국의 2024년 8월 30일 제 3872/TCT-CS 호 OL)

#### 대금 미지급 조건으로 계열사로부터 기계 장비를 수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비용 미지급 조건으로 자회사로부터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고,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설립으로 인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4년 8월 30일 제 6187/ CTBGI-TTHT호 OL)





#### 간접세 ("Indirect Tax")

#### 지침 문서

#### 세무 당국의 감사를 받은 세금 환급 기간 동안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

회사가 세무 당국에 의해 감사를 받은 세금 환급 기간 동안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견한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발견된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생했던 시 점 에 신 고 해 야 한 다. 또 한, 세무감사가 끝난 후에는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미 세금 환급을 위해 세무 감사를 받은 기간의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후 기간에 신고할 수 없으며, 해당 감사 기간의 수정 신고에서도 반영할 수 없다.

(Binh Dinh 세무국의 2024년 8월 19일 제 3026/CTBDI-TTHT 호 OL)

####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회사가 규정에 맞지 않게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을 받았으나, 여전히 VAT 공제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환급 철회 결정이 전달된 세금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01/GTGT호 양식의 38 항목 에 공제 가능한 세액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ai Duong 세무국의 제 7693/CTHDU-TTHT호OL)

#### 대리점 수수료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단말 장비와 관련된 연장 보증 서비스 패키지 제공의 중개자로 활동하는 회사는 10%의 부가가치세(VAT)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회 사 는 본 사 의 이 름 으 로 발 행 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받은 상품에 대한 매입 VAT를 신고해야 하며,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매출 VAT를 신고해야 한다.

(Binh Phuoc 세무국의 2024년 8월 19일 제 2863/CTBPH-TTHT호 OL)



#### 간접세 ("Indirect Tax")

#### 지침 문서

#### 세무조사 종료 후 인정되지 않은 지급 증빙서류

세무 감사 결과, 수출 수익과 관련된 지급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 당국이 매입 VAT를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정을 바탕으로 공제 불가 또는 환급 불가로 판정된 VAT 금액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다. 세무 당국이 이미 결정한 공제 및 환급 불가 VAT 금액은 변경될 수 없다.

(Binh Dinh 세무국의 2024년 9월 9일 제 3244/CTBDI-TTHT 호 OL)

#### 종속 회계 지점 및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규정

본사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종속 회계 지점의 경우, VAT는 회사 본사에서 연결 형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회사는 투자 프 로 젝 트 와 관 련 된 매 입 VAT 를 제02/GTGT호 양식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VAT 신고서인 제01/GTGT 양식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본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종속 회계 지점의 제01/GTGT 양식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전된 VAT는 규정된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Quang Nam 세무국의 2024년 8월 19일 제 6816/CTQNA-TTHT 호 OL)

#### 정기 예금 이자에 대한 은행으로의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가 은행에 현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분기별로 이자를 받는 경우, 정기예금 서비스에 대해 은행에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송장은 은행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발행해야 한다.

(Binh Dinh 세무국의 2024년 9월 13일 제 3332/CTBDI-TTHT호 OL)



### 개인소득세 ("PIT")

#### 지침문서

#### 직원 휴가비에 대한 PIT

직원 휴가비가 법인세(CIT) 규정 문서에 명시된 조건과 수혜자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비용은 PIT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휴가비가 직원들에게 수혜자 이름 없이 집단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비용은 PIT 면제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9월 4일 제 24530/CTBDU-TTHT호 OL)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서, 거주증 및 비자 수수료에 대한 PIT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서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한 자격에 필요한 것이며 회사의 책임으로 간주되므로 PI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주증 및 비자 준비와 관련된 비용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 이는 규정에 따라 PIT의 적용을 받는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4년 8월 28일 제 6121/CTBGI-TTHT호 OL)

#### 의무 보험 대상이 아닌 직원의 보험료에 대한 PIT

의무 사회 보험 및 의료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직원에게 지급된 추가 의무 사회 보험 및 건강 보험 비용은 서명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PIT 계산을 위한 과세 대상이 되며, 지급된 기간에 따라 과세된다.

회사는 외국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사회 보험을 원천 징수한 세금 기간과 관련된 잘못된 신고에 대해 지급해야 할 PIT를 수정해야 합니다.

(Long An 세무국의 2024년 8월 26일 제 3813/CTLAN-TTHT 호 OL)



### 외국인 계약자세 ("FCWT")

## 지침문서

### 베트남에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계약자의 세금 코드 등록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는 계약자 계약에 따라 건설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외국인 계약자가 설립한 것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약자를 위한 세금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이세금 코드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의 외국인 계약자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사용되어야 한다.

(Thanh Hoa 세무국의 2024년 9월 11일 제 8196/CT-TTHT 호 OL)





###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 지침 문서

#### 국내 기업의 수출 가공업체(EPE) 위탁 가공에 관한 안내

관세 절차에 관하여: EPE (수출가공기업)가 내국 기업에 의뢰하여 생산 중에 발생한 스크랩을 재활용 및 재사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국 기업은 외국 계약자를 위한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 절차를 준수한다. EPE는 관세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수출 상품의 처리 및 생산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제공한다.

관세 정책 관하여: 내국 기업 (비관세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EPE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수출 관세의 대상이 된다.

내국 기업(비관세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이 EPE로부터 국내 시장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수입 관세의 대상이 된다.

(관세총국의 2024년 8월 19일 제 3946/TCHQ-TXNK 호 OL)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 사용 목적 자의적으로 변경 시 수입 관세 면제 물품 처리

수입 관세 면제 물품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 이전에 관한 관세 절차에 대하여:

기업이 물품 이전 전에 관세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이전받은 기업이 관세 당국에 새로운 관세 신고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이전된 물품은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용 목적 변경 물품의 수입 관세 납부 의무에 대하여:

수입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수입한 후용도를 변경하는 기업은 새로운 관세 신고를 등록하고 관세 당국에 전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관세 당국은 행정 처벌을 부과하거나 범죄 활동의 증거가 있을 시 관련 당국에 형사 소추를 권고할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4년 8월 19일 제 3931/TCHQ-TXNK호OL)

#### 중국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C/O Form E

중국의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C/O Form E와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 중국 관세과 CCPIT는 2024년 9월 1일부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를 위해 전자 서명 및 전자 도장이 포함된 자가 출력 C/O Form E를 발급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기존의 수기 서명 및 잉크 도장이 포함된 전통적인 형식의 C/O Form E 발급도계속 유지한다.
- C/O Form E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 당국은 C/O 우측 상단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중국 관세 또는 CCPIT의 전자 정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C/O Form E의 세부 사항을 감사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8월 26일 제 4082/TCHQ-GSQL호OL)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 수입자와 공급자 간의 특수 관계 신고 및 관세 평가 결정

#### 특수 관계의 결정:

기업은 실제 문서(예: 양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판매 조건을 설명하는 마스터 계약, 판매 계약 등)에 근거하여 2015년 3월 25일자 제39/2015/TT-BTC호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독점 대리인, 유통업체 또는양수인 역할을 하고, 이 관계가제39/2015/TT-BTC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a 점부터 h점까지의 항목 중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이는 특수 관계로 간주된다.

**관세 가치 신고**: 수입 신고서의 "가치 분류 코드"란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한다:

코드 "6" - 특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래 가치 방법을 적용할 때;

코드 "7" - 특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 가치 방법을 적용하되, 신고된 거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관세 가치의 감사 및 결정:

- 관세 신고자의 책임: 관세 신고자는 관세 가치를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 자가 신고하고 관세 가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신고자는 신고 및 결정한 관세 가치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된 대로 필요한 보조 문서를 제출/제시해야 한다.
- 관세 당국의 역할: 관세 당국이 불일치 사항을 의심하는 경우, 관세 신고자에게 가격 상담을 위한 필요한 관세 문서, 기록 및 보조 문서를 준비하도록 통보한다. 관세 당국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관세 가치를 거부하거나 재평가할 권리를 보유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8월 26일 제 4088/TCHQ-TXNK 호 OL)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 관세 검사 및 감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카메라 시스템을 갖춘 창고, 시설 및 EPE

관세총국의 검토에 따르면, 여러 창고 및 집하장에 설치된 온라인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현재 관세 규정에서 요구하는 검사, 감독 및 통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창고 및 집하장에 대해: 관세총국은 각지방 관세 당국에 제공된 접근 주소를 기반으로 창고 및 집하장의 모든 카메라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 카메라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관리하는 관세 하위 부서는 창고 운영자에게 해당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시하고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자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고 카메라 시스템이 관세 검사 및 감독 요건(연결성, 접근성 및 데이터 보존 기간 등)을 충족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지방 관세 당국은 관세총국에 보고하고 창고 또는 집하장에 대한 정지 또는 종료 절차를 개시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EPE에 대해: 지방 관세 당국은 비준수 카메라 시스템을 가진 EPE에 대해 검토하고 통지하며, 관세 당국과의 온라인 연결성 및 데이터 보존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카메라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동안, 관세 당국은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 수준을 높이며, 이러한 기업의 후속 선적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관세 당국은 2016년 9월 1일자제 134/2016/ND-CP호 시행령, 제 28.a 조제 3항, 제 4항, 제 5항, 제 6항 및 제 7항을 참고하여 EPE가 관세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정 사례에 대해 세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8월 27일 제 4111/TCHQ-GSQL호 OL)



##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Pham Thi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이상근 회계사 KSG 부대표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a href="https://www.deloitte.com/about">www.deloitte.com/about</a>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